

1. 개정이유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보다 높은 인력 수준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개선하여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상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근로관계 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보다 높은 인력 수준의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개정 필요

2) 이에,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칙 규정을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시설이 상향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3) 보다 높은 수준의 인력이 배치되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6 중 요양보호사 “2.3명당”을 “2.1명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4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본문 관련)

현행					개정안				
6. 직원의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생략)	요양 보호사		직종별 시설별		(현행과 같음)	요양 보호사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u>2.3명당</u> <u>1명</u> (차매찬급실은 2명당 1명)	(생략)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u>2.1명당</u> <u>1명</u> (차매찬급실은 2명당 1명)	(현행과 같음)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입소자 <u>2.3명당</u> <u>1명</u> (차매찬급실은 2명당 1명)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입소자 <u>2.1명당</u> <u>1명</u> (차매찬급실은 2명당 1명)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입소자 3명당 1명 (차매찬급실은 2.5명 당 1명)	(생략)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입소자 3명당 1명 (차매찬급실은 2.5명 당 1명)	(생략)